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2024.10.25. 조례 제2986호로 일부개정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적용요금에서 “일반용 301이상” 구간의 단가 표기에 발생한 오탈자(1,8000→1,800)를 정정하여, 이를 통해 2026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제10조 제2항 별표 1)

개정전						개정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0	2,250			301이상	1,440	1,800	2,2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9. 25.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5. 10. 13.

2. 제안이유

- 2024.10.25. 조례 제2986호로 일부개정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적용요금에서 “일반용 301이상” 구간의 단가 표기에 발생한 오탈자($1,8000 \rightarrow 1,800$)를 정정하여, 이를 통해 2026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제10조 제2항 별표 1)

개정전					개정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0	2,250		301이상	1,440	1,800	2,250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¹⁾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일반용 301이상” 구간의 단가 표기에 발생한 오탈자(1,8000→1,800)를 정정

1) 「**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일반용 사용요금 중 1,8000을 1,800으로 수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1] 중 ‘일반용 301m³ 이상’ 구간의 단가 표기에서 발생한 단순 오탈자 (1,8000→1,800)를 정정하여 법령 문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실제 요율 수준이나 부과 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정비 차원의 개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는 수치, 단위, 용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규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5
----------	-----

제출년월일 : 2025. 9. 25.

제출자 : 평창군수

1. 의결주문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10.25. 조례 제2986호로 일부개정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적용요금에서 “일반용 301이상” 구간의 단가 표기에 발생한 오탈자(1,8000→1,800)를 정정하여, 이를 통해 2026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안 제10조 제2항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제10조 제2항 별표 1)

개정전					개정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0	2,250		301이상	1,440	1,800	2,25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8. 21. ~ 2025.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252호, 상하수도사업소-13041(2025. 8. 21.)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738(2025. 8. 14.)호]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기획예산과-12738(2025. 8. 14.)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0523(2025. 8. 18.)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4481(2025. 9. 15.)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4834(2025. 9. 19.)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반용 사용요금란 중 “1,8000”을 “1,8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가정용</td> <td>0~10</td> <td>450</td> <td>560</td> <td>700</td> <td></td> </tr> <tr> <td>11~30</td> <td>490</td> <td>620</td> <td>770</td> <td></td> </tr> <tr> <td>31이상</td> <td>680</td> <td>850</td> <td>1,06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용	0~10	450	560	700		11~30	490	620	770		31이상	680	850	1,06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용</td> <td>0~50</td> <td>1,080</td> <td>1,350</td> <td>1,690</td> <td></td> </tr> <tr> <td>51~300</td> <td>1,270</td> <td>1,580</td> <td>1,980</td> <td></td> </tr> <tr> <td>301이상</td> <td>1,440</td> <td>1,8000</td> <td>2,2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0	2,2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욕탕용</td> <td>0~10</td> <td>450</td> <td>560</td> <td>700</td> <td></td> </tr> <tr> <td>11~30</td> <td>490</td> <td>620</td> <td>770</td> <td></td> </tr> <tr> <td>31이상</td> <td>680</td> <td>850</td> <td>1,06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욕탕용	0~10	450	560	700		11~30	490	620	770		31이상	680	850	1,06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산업용</td> <td>0~50</td> <td>1,080</td> <td>1,350</td> <td>1,690</td> <td></td> </tr> <tr> <td>51~300</td> <td>1,270</td> <td>1,580</td> <td>1,980</td> <td></td> </tr> <tr> <td>301이상</td> <td>1,440</td> <td>1,800</td> <td>2,25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산업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	2,2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욕탕용</td> <td>m³당</td> <td>870</td> <td>1,090</td> <td>1,360</td> <td></td> </tr> <tr> <td>m³당</td> <td>1,530</td> <td>1,910</td> <td>2,390</td> <td></td> </tr> <tr> <td>m³당</td> <td>1,530</td> <td>1,910</td> <td>2,39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욕탕용	m ³ 당	870	1,090	1,360		m ³ 당	1,530	1,910	2,390		m ³ 당	1,530	1,910	2,39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rowspan="2">구간별 (m³)</th> <th colspan="3">사용요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2025년</th> <th>2026년</th> <th>2027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산업용</td> <td>m³당</td> <td>870</td> <td>1,090</td> <td>1,360</td> <td></td> </tr> <tr> <td>m³당</td> <td>1,530</td> <td>1,910</td> <td>2,390</td> <td></td> </tr> <tr> <td>m³당</td> <td>1,530</td> <td>1,910</td> <td>2,39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산업용	m ³ 당	870	1,090	1,360		m ³ 당	1,530	1,910	2,390		m ³ 당	1,530	1,910	2,390		<p>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u>불분명</u>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p>					<p>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u>불분명</u>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p>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용	0~10	450	560	700																																																																																																																																																																	
	11~30	490	620	770																																																																																																																																																																	
	31이상	680	850	1,060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일반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0	2,250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욕탕용	0~10	450	560	700																																																																																																																																																																	
	11~30	490	620	770																																																																																																																																																																	
	31이상	680	850	1,060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산업용	0~50	1,080	1,350	1,690																																																																																																																																																																	
	51~300	1,270	1,580	1,980																																																																																																																																																																	
	301이상	1,440	1,800	2,250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욕탕용	m ³ 당	870	1,090	1,360																																																																																																																																																																	
	m ³ 당	1,530	1,910	2,390																																																																																																																																																																	
	m ³ 당	1,530	1,910	2,390																																																																																																																																																																	
구분 업종	구간별 (m ³)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산업용	m ³ 당	870	1,090	1,360																																																																																																																																																																	
	m ³ 당	1,530	1,910	2,390																																																																																																																																																																	
	m ³ 당	1,530	1,910	2,390																																																																																																																																																																	

관 계 법령 발췌

□ **하수도법(법률제19590호)**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수도법시행령(대통령령제34318호)**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연락처	(033) 330 - 2363